

(1) 기타재산수입

54 - 545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기타재산수입 | 6,124 | 5,728 | 5,728 | 1,467 | 1,467 | △4,261 | △74.4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금운용계획의 수입 및 지출에 따른 사업 대기성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납액 | 3,850 | 3,646 | 6,124 | 7,189 |

(2) 법정부담금

59 - 59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법정부담금 | 687,320 | 696,600 | 696,600 | 1,002,004 | 1,002,004 | 305,404 | 43.8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| |
|--|
| <p>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된다.</p> <p>2. 전파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 제1항(같은 법 제16조 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 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</p> <p>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에 따른 분담금</p> <p>②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 및 종합편성 또는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광고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법에 따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,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로부터 전년도 방송서비스 매출액에 그 100분의 6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<p>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상품 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로부터 전년도 결산상 영업이익에 그 100분의 15의 범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징수율을 곱하여 산정한 분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.</p> |
|--|

2. 수입 개요

○ 방송사업자 부담금(186,641백만원) 및 통신사업자 주파수할당대가(815,363백만원)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수납액 | 546,666 | 952,011 | 687,320 | 662,890 |

(3) 기타경상이전수입

59 - 596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기타경상 이전수입 | 28,163 | 33,018 | 33,018 | 40,782 | 40,782 | 7,764 | 23.5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금사업비 비R&D 및, R&D사업에 대한 집행잔액, R&D사업에 대한 기술료 등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수납액 | 28,552 | 36,204 | 28,163 | 34,705 |

(4)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2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| 100,000 | 77,159 | 77,159 | 14,230 | 14,230 | △62,929 | △81.6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0년)말 통화금융기관(시중은행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 - 하나은행, 국민은행 등 18개 시중은행 중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된 자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수납액 | 47,000 | 10,000 | 100,000 | 25,000 |

(5)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

85 - 8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회수 | 316,319 | 38,857 | 38,857 | 9,486 | 9,486 | △29,371 | △75.6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전년도('20년)말 비통화금융기관(증권사 등)에 예치한 여유자금 회수액
- 한국투자증권, NH투자증권 등 22개 증권사 중 안정성 및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치된 자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-|--------|
| 수납액 | 205,762 | 80,778 | 316,319 | 22,584 |

(6) 기금예탁원금회수

92 - 92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기금예탁 원금회수 | 100,000 | 350,000 | 350,000 | 90,000 | 90,000 | △260,000 | △74.3 |

1. 법적 근거

○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○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원금중 당해연도 만기 도래하는 원금 회수액
- '19년 3,500억원 예치, '20년 계획 900억원 예치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
| 수납액 | 100,000 | 100,000 | 100,000 | 350,000 |

(7) 기금예수금

94 - 94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기금예수금 | - | - | 207,389 | 282,729 | 282,729 | 75,340 | 36.3 |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
2. 「전과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과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제11조(수입금)

법 제25조제1항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”이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을 말한다.

1. 기금의 자산에 속하는 국유재산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금
2. 법 제25조제7항에 따른 가산금
3. 차입금
4.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가 인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수입 부족분에 대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부터의 예수금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|
| 수납액 | - | - | - | 207,389 |

(8) 기금예탁이자수입

95 - 953

< 방송통신발전기금 >

(단위: 백만원, %)

| 목명 | 2019년 결산 | 2020년 | | 2021년 | | 증감 (B-A) | (B-A)/A |
|-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|
| | | 당초 | 수정(A) | 당초 | 수정(B) | | |
| 기금예탁 이자수입 | 3,838 | 7,173 | 7,173 | 1,125 | 1,125 | △6,048 | △84.3 |

1. 법적 근거

-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5조(기금의 조성)

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.

1. 정부의 출연금 또는 용자금
2. 「전파법」 제7조제2항에 따른 징수금, 같은 법 제11조제1항(같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에 따른 주파수할당 대가 및 같은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보증금, 같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
3.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분담금
4. 방송사업자의 출연금
5. 기금 운용에 따른 수익금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

2. 수입 개요

- 기획재정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한 원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

3. 최근 4년간 결산내역

(단위: 백만원)

| 연도 | 2017년 | 2018년 | 2019년 | 2020년 |
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수납액 | 1,773 | 260 | 3,838 | 1,167 |